##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산업단지는 입주기업의 86%가 제조업으로 사실상 산업단지는 제조업 경쟁력 향상 및 중소기업 집적지로서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는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서비스업은 지원시설용지에 입주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산업간 융복합이 활발해지고 서비스업도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서비스업의 산업시설용지 입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제조업과 융·복합을 통해 고도화가 가능한 서비스업에 대하여 산업 시설용지 입주가 가능하도록 서비스업종 입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

## 2. 참고사항

조제16~19호 신설)

가. 관계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하였음

라. 기 타 : 1) 신 · 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전

3) 규제심사 : 사전검토 요청 전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63호

##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산업시설 입주허용 시설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에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6.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산업시설용지 내 입주허용 업종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포함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 17. 법무 관련 서비스업
- 18.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 19. 기타 금융투자업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입주허용 시설) 『산업입지	제1조(입주허용 시설)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5호에서 "국토교통	
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	
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16.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산업시설용지 내 입주
	허용 업종에 자동차 및 트레
	일러 제조업이 포함된 산업단
	지에 한정한다.)
<u> &lt;신 설&gt;</u>	<u>17. 법무 관련 서비스업</u>
<u> &lt;신 설&gt;</u>	18.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u>&lt;신 설&gt;</u>	19. 기타 금융투자업